

「평창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#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7년 11월 20일, 평창군수 제출
- 회부일자 : 2017년 11월 27일 회부
- 상정일자 : 제233회 평창군의회(정례회)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 
(2017년 12월 6일 상정·의결)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보건사업과장 김남섭)

### 가. 제안이유

- 법제처에서 통보한 정비과제로, 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」 제21조제1항에서 보건진료소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마다 주민으로 구성되는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
- 위 법에 따르면 협의회는 주민으로 구성되고, 인가를 받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, 조례에서 평창군수의 인가를 받아 성립하게 하는 것은 법령의 위임없이 규제를 신설하는 것으로 법에 합치하도록 이를 정비하는 사항임.

### 나. 주요내용

- 위법의 소지가 있는 규정 삭제(안 제2조제2항)
  -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평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. <삭제>

- 규정 삭제에 따른 조 제목 변경(안 제2조)
  - (당초) 설치 ⇒ (변경) 구성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: 박용호)

- 본 조례안은 평창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구성에 있어 상위법에서 위임 하지 않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어 관련법에 저촉되므로 이를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**【붙임】** 평창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평창군 조례 제 호

## 평창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 제목“(설치)”를“(구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구성) 평창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 내 주민을 회원으로 구성한다.

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